
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유성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8. 7. 6.

발 의 자 : 유성엽·장정숙·이찬열
김광수·김경진·정인화
천정배·김종희·황주홍
장병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,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,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현행법에 따른 ‘원자력이용자의 허가·재허가·인가·승인·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’의 한 내용으로 심의·의결을 하고 있으나,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5호의2 신

설).

법률 제 호
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)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~ 15. (생 략)</p>	<p>제12조(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)</p> <p>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2.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 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